

##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사록

1. 회의 일시 : 2016년 12월 30일(금), 10:00~11:00
2.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
3. 장 소 : 15층 임원회의실
4. 심의 안건

연번	안 건
1	2017년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2	2017년 보건관리업무 위탁시행(안)

5. 심의 자료 : ‘따로 붙임’
6. 의결 주문

서울주택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016년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상기 『4.심의 안건 (1) 및 안건(2)』를 승인한다.

7. 심의·의결 결과(\*과반수 6명 이상 참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시 가결)
  - 의사 요건 : 10명중 ( 8 )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 ( 0 )충족 ( )부족
  - 결의 결과 : 참석위원 ( 8 )명중 ( 8 )명 찬성으로 ( 0 )가결 ( )부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2항 사업주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                                      |
|---|--------------------------------------|
| 1. 산업재해 예방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에 관한 사항                            | 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

※ 산업안전보건법령 제 25조의4 [회의]

1.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사업장의 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8. 참석위원 서명

사용자측		근로자측	
대표위원 (사장)	불참 (서명)	대표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불참. (서명)
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종인 영사 (서명)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김지영 제명
위원 (안전보건부서장)	불완수 (서명)	위원 (근로자대표 지명)	권영진 (서명)
위원 (안전관리자)	신연철 (서명)	위원 (근로자대표 지명)	이 백준 (서명)
위원 (보건관리자)	김익근 (서명)	위원 (근로자대표 지명)	이 김재원 (서명)